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9. 26. 이인순 의원 외 13명 발의(의안번호 190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1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학대·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센터 설치(안 제3조~제4조)
- 지원대상 및 센터의 기능(안 제5조~제6조)
-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제8조)
- 비밀 준수 의무 및 시행규칙(안 제9조~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동행정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예산 범위 내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9. 26. ~ 2023. 10. 1.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제정안은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협력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가정폭력·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2018년 10개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시 25개구가 운영 중이며, 별도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노원구·구로구·중랑구 3곳임.

〈참고〉‘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 ▶ 개소일/ 위치: '20.11.07./ 성북구청 4층
- ▶ 사업대상: 위기상황(가정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가구
- ▶ 사업내용
 - 가정폭력 112신고(동의)가구에 대한 전화상담을 통해 위기가구 조기발굴·개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성과 가시화
 - 학대예방경찰(APO)과 가정폭력신고(112·117) 정보 공유를 통한 위험가구 선제적 대응
 - 경찰과 협업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 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및 재발 방지
- ▶ 인 력: 5명(학대예방경찰2, 상담원2, 통합사례관리사1)
 - 상시상주 인원: 2명(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
- ▶ 소요예산: 인건비 포함 2,700만원(전액 시비보조금)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가정폭력 접수 현황〉

구분	센터의뢰건수			상담 실시가구	서비스제공(건수)							무응답
	계	성북서	중암서		합계	단순상담	정보제공	위통센터	외부기관 연계	찾동 연계	사례 관리	
2023년 8월	338	168	170	295	295	147	141	-	6	-	1	43
2022년	368	116	252	327	327	141	167	2	21	-	2	41
2021년	698	273	425	635	635	580	53	2	47	4	2	63
2020년	76	32	44	73	73	30	36	0	6	1	0	3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는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종합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가정폭력·학대 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과 위기 가정통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원활한 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8조와 제9조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지원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해오던 성북구 위기 가정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9. 26. 김육영 의원 외 21명 발의(의안번호 191호)
- 나. 회부일자: 2023. 10.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17.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다문화가족지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 추가(안 제4조)
- 위원의 해촉 사항 추가(안 제13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기간 변경(안 제17조)
-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1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9. 26. ~ 2023. 10. 1.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정서적 안정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는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인지²⁾ 또는 귀화³⁾허가로 인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2) 인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함.

“귀화자”와 “인지 또는 귀화허가에 의한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까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4조(지원사업)제6호부터 제9호까지는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외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정보,
문화체험 및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을 추가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안 제4조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4조(지원 사업)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자활지원 3.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의 평 등을 위한 상담, 부부 및 부모교육, 가족 생활교육,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4. 다문화가족 내 폭력 등 가족해체의 위 기 관련 보호 및 방지 지원 5.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4조(지원 사업) 1. ~ 5. (현행과 같음) <u>6.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 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u> <u>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 의 서비스 연계 사업</u> <u>8.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 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 보지의 발간·배포</u> <u>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 체육 행사 등</u> 10. (현행 제6호와 같음)

- 안 제13조(위원의 해촉)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에 부당한 영향력

3) 귀화(歸化)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말함. 귀화에는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법률에 의하는 귀화로서 결혼 등에 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외국에 귀화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을 경우인데, 이를 좁은 뜻에서의 귀화라고 한다.

행사 및 비밀누설 등을 추가하여 해촉 요건을 강화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음.

〈안 제13조 개정 전·후 비교〉

현행	개정안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1.~2. (현행과 같음)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안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⁴⁾ 및 지침에 따라 변경한 것이며, 현재 성북구 다문화지원센터는 상위법령을 근거로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안 제23조(실태조사 등)는 실태조사 조문을 삭제한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4)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상의 실태조사와 차별성이 없다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삭제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그 밖에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제2호 조문 중 “결혼이민자 등”을 「다문화가족지원법」 5)과 일치하도록 “결혼이민자등”⁶⁾으로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6)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101~102쪽)에 따른 “등” 의 띄어쓰기와 붙여쓰기 차이점

의존명사인 “등” 띄어쓰기가 원칙이다. 그런데 “등” 은 두 가지의 국어사전적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뜻과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 법령의 정의나 약칭에서 주로 쓰는 “등” 은 두 번째 의미로 쓴 것이다. 그러나 법령문뿐만 아니라 일반 문장에서도 두 가지의 다른 “등” 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법령에서 정의나 약칭에는 쓰는 “등” 은 그것만으로 한정하는 “등” 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띄어쓰기 및 부칙 신설

나. 수정내용

○ 제2조제2호 “결혼이민자등”으로 수정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1
----------	--------

제안 연월일: 2023년 10월 17일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띄어쓰기 및 부칙 신설

2. 주요내용

가. 수정이유 : 띄어쓰기 및 부칙 신설

나. 수정내용

- 제2조제2호 “결혼이민자 등”을 “결혼이민자등”으로 수정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결혼이민자 등” 이란” 을 “ “결혼이민자등” 이란” 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원안(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1. ----- ----- ----- ---.	1. ----- ----- ----- ---.
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가. (원안과 같음)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	나. (원안과 같음)

<u>가족</u>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 원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나. (생략)	<u>특한 자로 이루</u> <u>어진 가족</u> 2. (현행과 같음) <신 설>	2. <u>“결혼이민자등”</u> <u>이란</u>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9. 26. 정윤주 의원 외 7명 발의(의안번호 192호)
- 나. 회부일자: 2023. 10.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17.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윤주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어린이·청소년 다수가 문해력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이하“청소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임. 이에 성북구의회 의원 발의로서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성북구 정책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서 “인터넷중독” 예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로 개정함.

- 제명 개정 사항을 본문에 반영함.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
- “인터넷중독”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다.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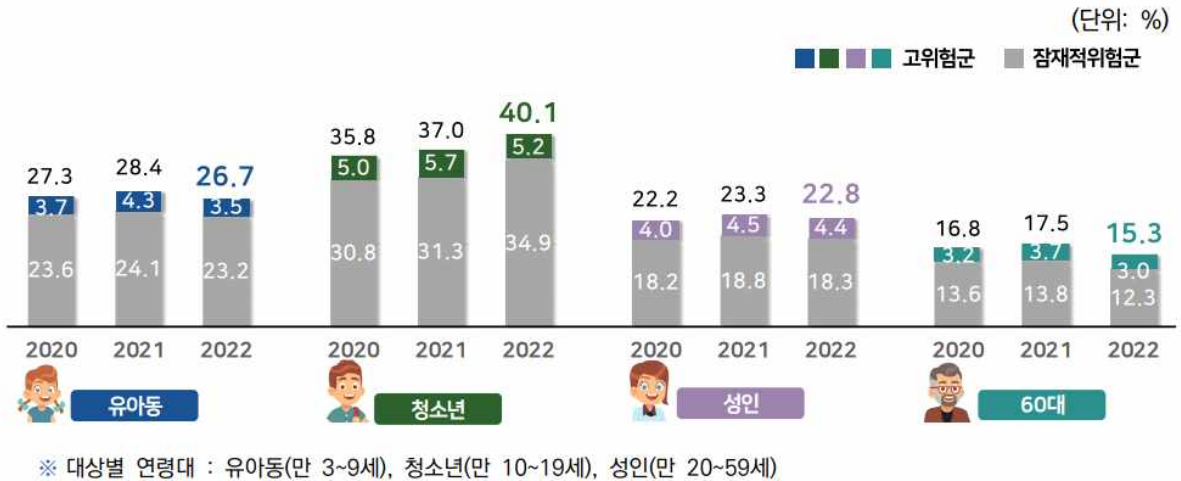
-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9. 26. ~ 2023. 10. 1.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27조를 근거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인터넷게임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음.
- 개정안 내용은 현 조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까지 포함한 “인터넷중독” 예방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성북구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임.
-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3.6%로 전년(24.2%) 대비 0.6%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연령대별 과의존위험군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동(만3~9세), 26.7%(-1.7%p), 성인(만20세~59세) 22.8%(-0.5%p), 60대 15.3%(-2.2%p)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그림 3-1-2]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 하지만 청소년들(만10~19세)의 인터넷 과의존도는 40.1%에 이르고 전년 대비 3.1% 상승하는 등 변화 추이를 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청소년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나. 주요내용

- 먼저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중독”으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 사업을 확대를 위해 현행 인터넷게임 중독 근거 법령인 「청소년 보호법」 제27조⁷⁾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자로 정의 규정을 변경하였음.

7)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2조제2호 정의 규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2.“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2.“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평생교육 지원활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일이 누락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부칙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 부칙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아울러,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⁸⁾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⁹⁾ 규정에 따라 서울시 내 학생들을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9)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2020.6.9.전부개정)으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2021.5.21.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변경 됨.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부칙 신설

나. 수정내용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2
----------	--------

제안 연월일: 2023년 10월 17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칙 신설

2. 주요내용

가. 수정이유 : 부칙 신설

나. 수정내용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원안	수 정 안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9. 26. 권영애 의원 외 21명 발의(의안번호 193호)
- 나. 회부일자: 2023. 10.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17.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권영애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구 평생학습관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에 따라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했던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등을 추가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안 제2조제3항)
-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추가(안 제2조제4항)
-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4조 등)
-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신설(안 제6조의2)
-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원,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사항 추가(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9. 26. ~ 2023. 10. 1.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이하“법”라 한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는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역할을 추가한 것으로, 「법」 제5조¹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10)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안 제6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부칙 제1조는 「법」 제21조의3 개정으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2024년 4월 19일로 부칙 제1조 단서에 시행일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u>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u>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2023. 4. 18.> [시행일: 2024. 4. 19.]

- 안 제8조(평생학습관의 기능)는 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6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안 제4조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제4조(평생학습관의 기능)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	<u>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u>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u>2의3.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u>
5. 독서·외국어·건강·교육·교양 등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3.~7.(현행과 같음)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u>8. 제6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u>
7.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한 것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관¹¹⁾으로 명칭 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및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평생교육 지원활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11) 성북구평생학습관 현황

- 개 관 일 : 2012. 2. 2. (학습도시 지정 2005년)
- 시설위치 :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 업무동 3층(하월곡동 230)
- 시설내용 : 강의실3, 동아리실2, 다목적실1, 사무실1, e-스튜디오실, 창고
- 인력구성 : 6명(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임기제8급 2명,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1명)
- 운영방법 : 직영 * 직영 21개구/위탁 2개구(강남구, 은평구)/미설치 2개구(광진구, 중구)
- 전체예산 : 524,890천원(국비10,400 시비 35,200 구비 479,290)
- * 학습관 시설예산 129,600천원 / 관리비 700만원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5.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79호)
- 나. 회부일자: 2023. 10. 12.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18.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이므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8. 17. ~ 2023. 09. 0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¹²⁾에 명시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9조¹³⁾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3)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2023년 제1차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존속기한 연장(안)이 원안가결 되었음.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급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0. (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0. 5.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80호)

나. 회부일자: 2023. 10.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황원숙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 현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예방접종의 종류, 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횟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지원 절차, 예방접종 위탁,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환수조치,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보장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8. 17. ~ 2023. 09. 06.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전부개정안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외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대상포진은 통증과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대상포진의 발생은 50세 이상 연령군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가량 높아 질병관리청에서는 6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15만원~60만원에 이르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유통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백신	제품명(제조사)	예방접종 비용	접종횟수
약독화 생백신	조스타박스(MSD)	15만원 내외	1회

	스카이조스터 (SK바이오사이언스)	17만원 내외	1회
유전자재조합(사백신)	싱그릭스(GSK) (22. 12. 국내도입)	25만원~30만원 2회: 50만원~60만원	2회

○ 따라서 대상포진의 발생 빈도가 높은 고령층 중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됨.

이와 관련한 조례를 시행 또는 예정인 서울시 자치구는 13개 구이며, 성동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수급자를 예방접종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자치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현황〉

〈2023년 7월 기준〉

연번	시행	조례유무	시행일	예방접종 대상
1	금천구	○	2020.9.18.조례제정 2022.시행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1년이상거주)
2	성동구	○	2018. 취약계층 시작 23.3월 일반확대	65세이상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 70세 이상 일반 어르신
3	서대문구	○	2021년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	광진구	○	2020.3.20.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	용산구	X	2020년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6	동대문구	○	2018.1.1.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년이상거주)
7	강동구	○	2020.1.1.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거주)
8	노원구	○	2023.2.1.	6개월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어르신 *2024년 65세 이상 확대 시행
9	서초구	○	2023.하반기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	은평구	○	2023.하반기	5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1년이상거주)
11	강남구	○	2023.하반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2	마포구	○	2024.상반기	7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년이상거주) 2024년 65세이상생계,의료급여수급자 (1년이상거주)2025년
13	송파구	준비	2024.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논의

나. 주요내용

-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플루엔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반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와 제3조(지원 대상), 제4조(예방접종의 지원 횟수)에서는 무료예방접종의 종류에 대상포진을 추가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접종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정하고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평생 1회로 규정하고 있음. 2023년 5월 말 기준 성북구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7,329명으로 비용추계에 따른 2024년 소요예산은 3억 8,70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현황

구분	전체인구	65세이상 어르신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비고
성북구(명)	429,689	78,854	7,329	

〈출처 : 성북구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인구현황〉

- 안 제5조(지원 절차)와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신청)는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위탁, 비용상환 신청 등에 대해 기존 조례 대비 구체화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 안 제8조(환수조치 등)와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는 예방접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이중으로 지원받을 경우 그 지원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의 범위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전부개정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14)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15)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등에

14)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의 목적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